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4.20(수)	
책임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홍식(02-2156-3300)	담당자	윤송이 사무관 (02-2156-3311)		
	금감원 기업공시국장 김도인(02-3145-8100)		정준아 팀장 (02-3145-8470)		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. 4. 20. 제8차 정례회의에서
 - 비상장법인 (주)와이디생명과학 및 동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·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
-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

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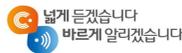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56-333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 - 팩스 : 02-3145-5544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<http://www.fss.or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 prfsc@korea.kr



<붙임>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(주)와이디생명과학	-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 - 소액공모(모집)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- 주요사항보고서(유상증자) 중요사항 거짓 기재 - 주요사항보고서(합병)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거짓 기재 -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 - 소액공모(매출)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-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86,300,000원 - 과태료 49,200,000원 - 증권발행제한 12월
OOO (매출인)	-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33,600,000원
(주)OO (매출인)	-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6,300,000원

- (주)와이디생명과학은 2011. 5. 27. ~ 2013. 12. 24.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을 48.1억원 발행함에 있어 증권신고서(3회)와 소액공모 공시서류(2회)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(유상증자 및 합병)를 중요사항 거짓 기재*(4회) 및 지연제출(1회)하였으며,

* 신주에 대하여 별도의 전매제한조치가 없었음에도 당해 신주를 1년간 보호예수를 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거짓 기재

- 2011. 1. 4. ~ 2015. 6. 11. 기간 동안 OOO 및 (주)OO가 총 7회에 걸쳐 377명에게 보통주를 55.9억원에 매출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(3회)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(4회)하지 않았고,
- 2011. 5. 16. ~ 2014. 8. 14. 기간 동안 정기보고서를 미제출 및 지연제출(7회)하였고,
- 2013. 10. 15. 건물 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를 제출(1회)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